대한장애인조정연맹 회장 선거 안내

제6대 대한장애인조정연맹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일정 및 행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회장선거 일시 및 장소

o 일 시 : 2020. 12. 10.(목) 13시

o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

□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

○ 2020. 11. 29.(일) 9시부터 ~ 12. 1.(화) 18시까지

□ 회장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

-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(별지 3호)
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
-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(별지 4호)
- 이력서 1부. (별지 5호)
- 후보자 공약사항 1부 (별지 6호)
-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1부 (별지 7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(별지 8호)
- 개표 참관인 신고서 1부 (별지 제14호 서식) ※ 선거일 전일까지 제출

□ 회장 후보 등록서류 교부

○ 대한장애인조정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□ 회장 후보자 등록 방법: 서면 제출

○ 신청서 제출처 : 대한장애인조정연맹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512호(여의도동, 제일빌딩)

- 전화 : 02-786-8466 (문의 김지성주임)

□ 회장선거 일정

일자	내용	비고
11. 29.(일) ~ 12. 1.(화)	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	
12. 1.(화) 18시 까지	후보자등록 마감	
12. 1.(화) 18시 이후	후보자 공고	
12. 2.(수) ~ 12. 9.(수)	후보자 선거운동	
12. 10.(목)	회장 선거	
12. 11.(금)	회장 당선인 공고	

대한장애인조정연맹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

관련근거: 대한장애인조정연맹 규약 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

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조정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조정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〈개정 '20.2.17.〉
- 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〈개정 '20.2.17.〉
-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 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 〈신설 '20.2.17.〉
-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〈개정 '20.2.17.〉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
- 5. 국회의원 〈개정 '20.2.17.〉
- 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〈신설 '20.10.26.〉
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장애인조정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장애인조정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장애인조정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조정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조정연맹과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〈개정 '16.9.27.〉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 시·도지부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 시·도지부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
<개정 '16.9.27.> <개정 '20.10.26.>